

# 고속도로 주행 광역버스, 안전띠 착용률 매우 낮아 개선 시급

서울-수도권간 주요 교통수단인 광역버스는 고속도로 운행 구간이 많아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나,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승객 안전띠 착용률은 매우 낮아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서울-수도권을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 및 '직행좌석버스\*\*' 총 6개 노선 30대(광역급행버스 3개 노선 15대, 직행좌석버스 3개 노선 15대)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광역급행버스** : 국토교통부에서 노선을 정하는 버스로 M버스(Metropolitan Bus)로 불리며, 수도권 내 2개 이상의 시·도를 거쳐 운행하면서 기점·종점 5km 이내 각 4개 이내의 정류소에만 정차함

\*\* **직행좌석버스** :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노선의 인·면허를 관장하며, 특별시·광역시 등 단일 행정구역을 운행하거나 또는 2개 이상의 시·도를 거쳐 운행함

글\_ 백민경 대리(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 승객 안전띠 착용률, 직행좌석버스는 3.4%에 불과

광역급행버스와 직행좌석버스에 탑승한 승객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고속도로 구간 운행 시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6개 노선\*별 승객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한 결과, 광역급행버스는 승객 326명 중 33명(10.1%), 직행좌석버스는 승객 406명 중 14명(3.4%)만 고속도로에서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어 착용률이 매우 저조했다.

\* 광역버스 M4101번 · M4403번 · M5107번 3개 노선, 직행좌석버스 9401번 · 8002번 · 8100번 3개 노선(고속도로를 경유하는 노선 중 운행횟수 상위 3개 노선임)

## 일부 노선, 안전띠 착용 안내방송 없어

직행좌석버스 1개 노선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기점 및 경유지에서 승객 승차 시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안전띠 착용 안내’ 방송을 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직행좌석버스 7대 차량에는 안전띠 착용 안내 스티커나 동 문구가 인쇄된 머리 시트가 없어 승객의 안전띠 착용 유도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 고속도로 주행 시 승객 안전 위해 승차정원 준수해야

「도로교통법」에서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 고속도로 주행 시 입석 등 승차정원을 초과하는 승객의 탑승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직행좌석버스 15대 차량은 출·퇴근 혼잡시간대에 고속도로 구간 입석승객이 최대 15명으로 확인됐다.

\*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입석 금지제로 운행되어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광역급행버스 · 직행좌석버스 안전띠 착용률 조사결과 [단위 : 명, (%)]

노선	탑승객 수	착용자	미착용자	
광역급행 버스	M4101	118(100.0)	14(11.9)	104(88.1)
	M4403	102(100.0)	8(7.8)	94(92.2)
	M5107	106(100.0)	11(10.4)	95(89.6)
	합계	326(100.0)	33(10.1)	293(89.9)
직행좌석 버스	9401	118(100.0)	5(4.2)	113(95.8)
	8002	118(100.0)	5(4.2)	113(95.8)
	8100	170(100.0)	4(2.4)	166(97.6)
	합계	406(100.0)	14(3.4)	392(96.6)

※ 조사자 및 입석 인원을 제외하였으며, 노선 · 차량별 좌석수 및 조사자 착석 여부 따라 회차별 탑승객 수가 상이할 수 있음

## 차량 내 비상망치 및 소화기 설치 개선 필요

사고 발생 시 차량 유리창을 깨고 탈출하기 위한 비상망치는 광역급행버스 1대 차량에 설치된 10개 중 1개가 탈락된 상태였고, 직행좌석버스 5대 차량에 부착된 38개는 형광띠가 없어 화재 시 어두운 상황에서 망치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없었다. 차량 내 소화기는 소화기의 능력 단위\*에 따라 최소 2개 이상이 설치되어야 하나, 직행좌석버스 2대 차량에는 1개의 소화기만 설치되어 있어 부적합했고, 광역급행버스 및 직행좌석버스 6대 차량의 소화기 2개 중 1개는 승객 좌석 밑이나 하차문 옆 좌석 하단부에 설치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사용이 어려워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안전띠 착용률 제고 방안 마련과 고속도로 주행노선 입석 승차 제한 방안 마련, 고속도로 주행 광역버스 안전띠 미착용 단속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고속도로 진입 전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할 것과 승차정원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갖고 버스를 이용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 능력단위 : 소화기 겉면에 표시하는 소화능력의 단위로, 간이소화용구의 경우 샵을 상비한 50L 이상의 마른 모래 1포가 0.5 능력단위를 가진.